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3층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1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백영기 [6574] / 보험정책급여팀장 고영옥 [6581] / 팀원 박소영 [6571] / E-mail 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04541호

시행일자 2026. 7. 1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-2871 (2026. 7. 10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보건복지부에서 「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」 관련 만성질환자의 진단서 인정기준이 변경되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<변경사항>
진단서에 ① 6개월 이상 ② 치료가 필요한 ③만성질환임을 기재 ※ 의료급여에서 정하는 11개 고시질환에 대해서는 ③만성질환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 (단, ① 6개월 이상 ② 치료가 필요함은 기재되어야 함) * 갑상선의 장애, 당뇨병, 정신장애 · 행동장애, 신경계질환, 고혈압,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, 만성간질환,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, 두개내손상, 뇌전증

*세부내용은 붙임 참조

붙임 1. 2026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안내(지침) 1부.
2. [공문]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협조 요청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 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